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성윤 · 최혁진
신장식 · 조계원 · 이학영
정혜경 · 이수진 · 용혜인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‘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’을 들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이에 국내·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,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조작의혹사건”을 “조작의혹사건(국내·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진실규명의 범위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·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.	제2조(진실규명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<u>조작의혹사건</u>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작의혹사건(국내·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)</u>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